

제283회 임시회
2009. 9. 21(월)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9. 21.
행정소방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9년 9월 2일

박재국 의원 외 6인

2. 회 부 일 자 : 2009년 9월 4일

3. 상 정 및 의 결 일 자

제28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2009. 9. 15)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유인물 대체)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 「지방자치법」 제15조(안 제1조, 안 제 2조)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양권석)

가. 개정개요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 요지 : “생략”

Ⅵ. 심사 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Ⅸ.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409 |
|----------|-----|

발의연월일 : 2009년 9월 2일

발 의 자 : 박재국, 연만흠, 강태원
김환동, 이필용, 장주식
조영재의원(7인)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 제15조

나. 연서주민수(안 제2조)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 제15조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별첨)

나. 관련부서 협의 : 의견없음(행정국)

다. 규제심사 :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조의3”을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제13조의3”을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후 |
|---|--|
| <p style="text-align: center;">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의3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시 연서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p style="text-align: center;">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시 연서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